

## 2026년 상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2.

### 공 주 시 장

#### 공고문 요약

- (사업량) 550백만원 / 약 295대 (5등급 159대, 4등급 117대, 건설기계 19대)  
※ 지원대수는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차는 경유 이외 연료 포함), ②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04년 이전 제작, '05년 이전 제작(75kW 이상 130kW 미만), '06년 이전 제작(75kW 미만) 지게차, 굴착기
- (신청기간)
  - ▶ 1차 접수 : 2026. 2. 23.(월) 09:00 ~ 2026. 3. 6.(금) 18:00
  - ▶ 2차 접수 : 2026. 3. 23.(월) 09:00 ~ 2026. 4. 3.(금) 18:00※ 예산소진 시 2차 접수 없이 조기마감할 수 있으며, 2차 접수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공고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신청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유로엔진 증빙)(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제작사 차량 사양 증빙서류(해당자만), 위임장(공동명의자만),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자만)
- (지원자격) ① 공주시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 ②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동차 ③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판정 ☞ 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인당 1대 지원 원칙  
※ ⑤번은 조기폐차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된 후 진행하는 절차임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른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금액 산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년부터는 지원 불가)

# 1 사업개요

○ (사업량) 550백만원 / 약 295대 (5등급 159대, 4등급 117대, 건설기계 19대)

※ 지원대수는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차는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 마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신청기간)

▶ (1차 접수) 2026. 2. 23.(월) 09:00 ~ 2026. 3. 6.(금) 18:00

▶ (2차 접수) 2026. 3. 23.(월) 09:00 ~ 2026. 4. 3.(금)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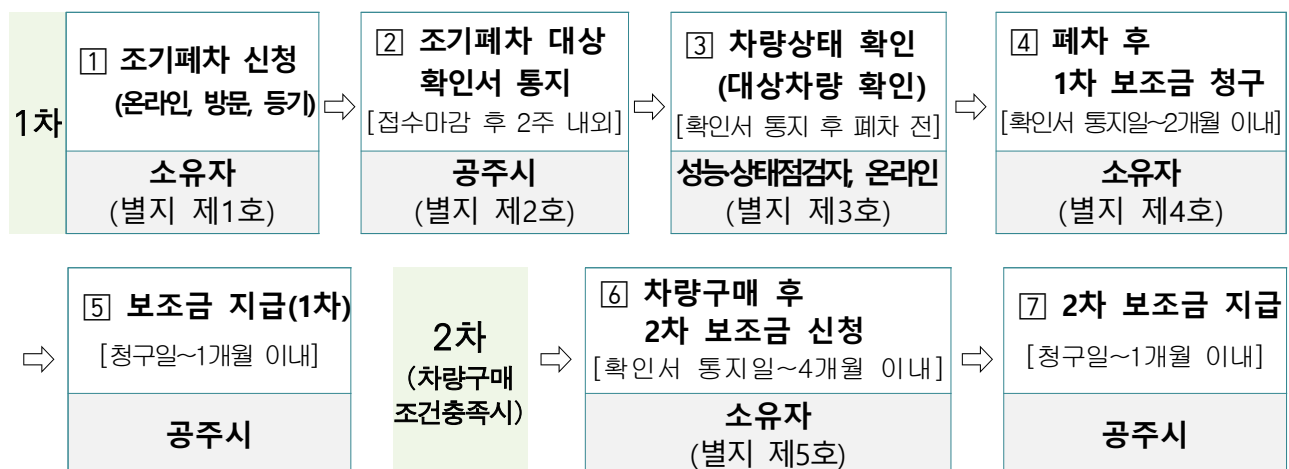
※ 예산소진 시 2차 접수 없이 조기마감할 수 있으며, 2차 접수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공고 예정

##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시청 도착분까지만 인정

※ 등기우편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조기폐차 담당자

## ○ (지원절차)



## ② 지원조건

### ○ (1차 보조금) ① ~ 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인당 1대 지원 원칙

- ①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조기폐차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된 후 진행하는 절차임
-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지원 제외**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관용차량,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 (2차 보조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조기폐차 신청 접수일 전에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한 경우,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
- ②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③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일치하여야 함

- 예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예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예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예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④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예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예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⑤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를 구매하거나,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예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⑥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⑦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⑧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 지급받은 자동차의 의무 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 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회수함 (단,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하여 예외 적용)

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 (중고여부 무관)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이륜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 제외

⑩-1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폐차 시(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중고여부 무관)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지원 제외

⑩-2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폐차 시(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2017. 10. 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⑪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시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지원 제외**

**총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차량구매 보조금(2차) 지원 없음**

## ○ 유의사항

### 【 공 통 】

- 신청서 제출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예산 조기소진으로 보조금 지급불가 할 수 있음
- 대상차량확인(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 신청(참고 2)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온라인(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2개월 경과 후 1차 보조금 지급청구 불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4개월 경과 후 2차 보조금 지급청구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상태여야 함
  -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제40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조치될 수 있음

### 【 저소득층 차량 】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소상공인 차량 】 ※ 저소득층 추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③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문서(참고 1) 참고**

○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공통)	<p>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p> <p>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p> <p>③ 차량 소유자 신분증(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동명의자인 경우,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모두 제출</p> <p>④ 위임장(공동명의자만) [별지 제6호]</p> <p>④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유로엔진 증빙)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p> <p>⑤ 제작사 차량 사양 증빙서류(해당자만)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서류 제출하여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가능하여야 함</p> <p><b>※ 신청서 제출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b></p>								
추가보조금 신청자	<p><b>【 소상공인 차량 】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b></p> <p>▶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p> <p>* 소상공인확인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p> <p>**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공통 제출서류</td> <td>사업자 등록증</td> </tr> <tr> <td>매출액 확인서류</td> <td>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 1</td> </tr> <tr> <td>상시근로자 확인서류</td> <td>·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中 택 1</td> </tr> <tr> <td>확인기준</td> <td>·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해설서」 60~68쪽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제출하신 서류 상 소상공인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중기청에 문의</td> </tr> </table> <p>☞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 9대, 그 외 업종은 연 4대로 한정하여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p>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 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中 택 1	확인기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해설서」 60~68쪽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제출하신 서류 상 소상공인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중기청에 문의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 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中 택 1								
확인기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해설서」 60~68쪽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제출하신 서류 상 소상공인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중기청에 문의								

	<p><b>【 저소득층 차량 】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li> <li>▶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li> </ul>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여 연 2대 한정하여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p>
	<p><b>【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없음 ⇒ 공주시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예정</li> </ul> <p>☞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p>

○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li> <li>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li> <li>③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용)</li> <li>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별지 제3호]</li> <li>* 현장확인과정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수수료 지원금은 14,000원 상한으로 14,000원 미만은 실비 지급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불가)</li> <li>**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제출 필요 없음(전산 확인 예정)</li> <li>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분) 납부확인서 (해당자만)</li> <li>⑥ 공동명의 소유자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자만)</li> <li>⑦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해당자만)</li> <li>*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li> </ul> <p><b>※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b></p>
차량구매 보조금(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li> <li>② 차량구매한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li> <li>③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용)</li> <li>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총중량 3.5톤 미만 中 해당자만)</li> <li>⑤ 공동명의 소유자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자만)</li> <li>⑥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해당자만)</li> <li>*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li> </ul> <p><b>※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b></p>

#### 4 선정 우선순위

※ **1인당 1대 지원 원칙이며 동 순위 시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

- ▶ 1순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2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
- ▶ 3순위 :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5 지원금액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20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2006년 차량가액은 20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100%	200%(신차)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6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 번복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문의처 : 조기폐차 관련 문의 ☎041-840-8532 / 853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문의 ☎041-840-8512 / 8517

- 붙임 1. (참고 1)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1부.
2. (참고 2)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신청방법 1부.
3. (참고 3) 조기폐차 주요 문의사항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 1부.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서식 (별지 제2호) 1부.
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서식 (별지 제3호) 1부.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 (별지 제4호) 1부.
8.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서식 (별지 제5호) 1부.
9. 위임장(공동명의자 제출) 서식 (별지 제6호) 1부.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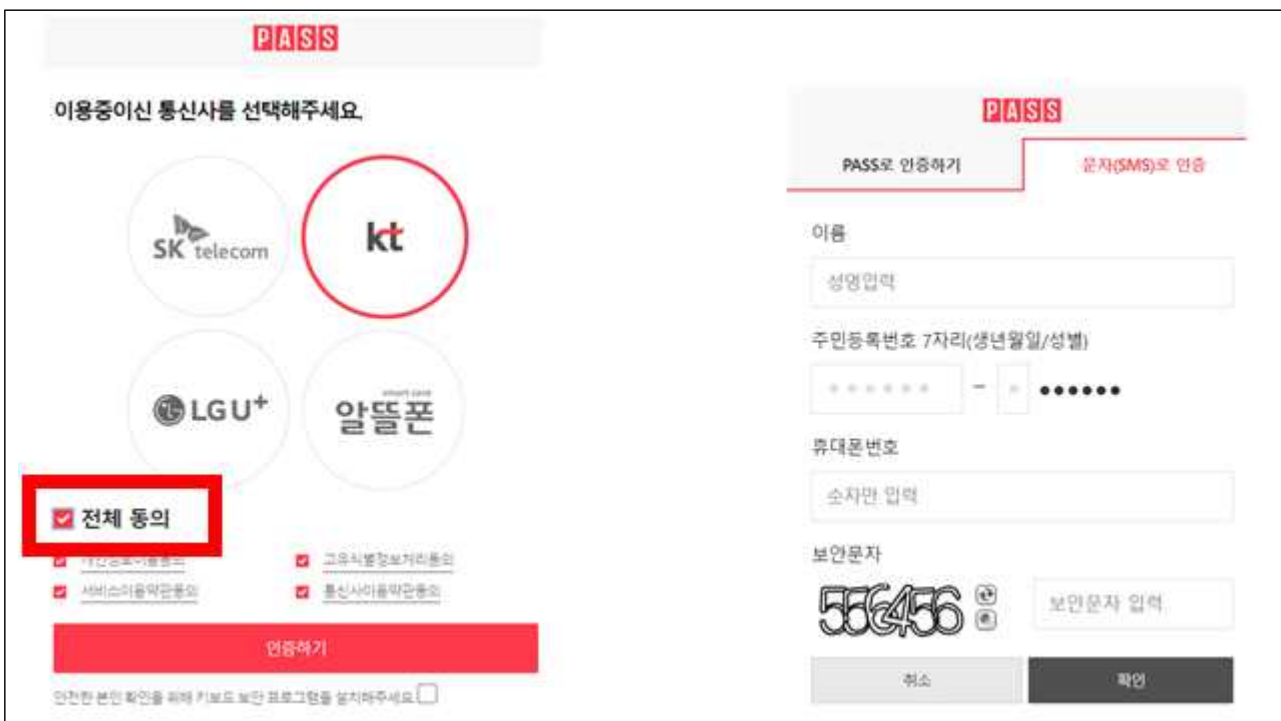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② 조기폐차 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이용약관 동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 이용약관(필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 ※신청차량 및 미개발정차 건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빙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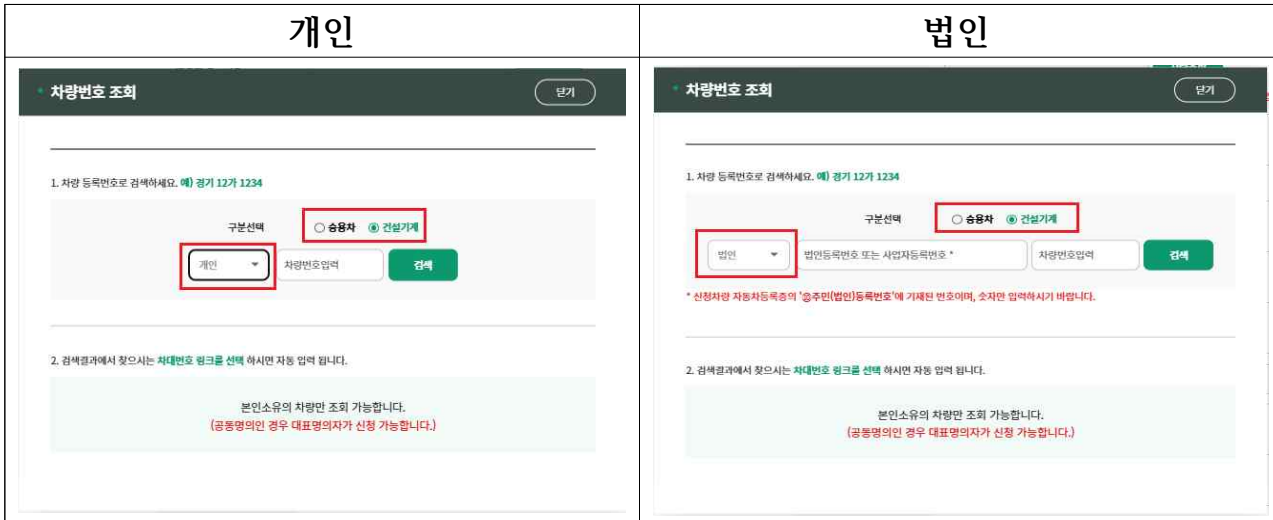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input type="text"/>
*휴대전화(대표자)	0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동차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input type="text"/>
*저공해조치 방법	<input type="radio"/> 저감장치 부착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기폐차
취약계층 <input checked="" type="radio"/> /소상공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여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input type="text"/>
연식	<input type="text"/>
소유자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청지자체	<input type="text"/>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팩스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조기폐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저공해신청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파일 첨부 가능

## 참고 2

##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신청방법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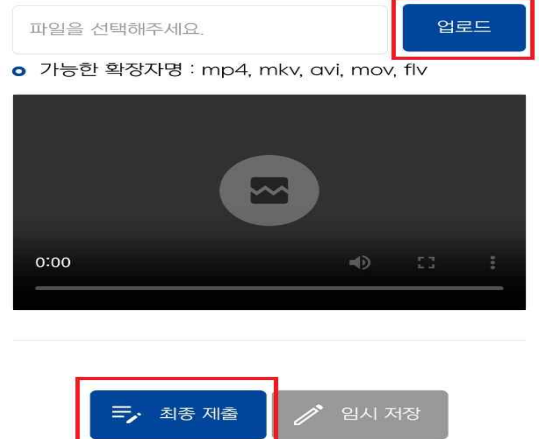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p><b>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li> <li>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li> </ol> <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2 단계 (차주)</p> <p>온라인 로그인</p>	 <p>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p> <p>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신청 및 결과확인</p>	<p>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p>						
<p>3 단계 (차주)</p> <p>정보 확인</p>	 <p>대상차량 확인</p> <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명의 보조금 신청 차량 목록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등록 번호 AA가1234</li> <li>•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li> <li>•차명 엑티언스포츠</li> <li>•연식 2011</li> <li>•폐차장 미지정</li> <li>•보조금 산정일 2024-01-15</li> <li>•입금 여부 미입금</li> <li>•사진 등록 일자</li> <li>•임시 저장 일자</li> <li>•검사 완료 일자</li> </ul> <p>진행상태 : 동영상등록 필요</p> <p>동영상등록</p>	<p>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p> <p>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p> <p>◎ 차량 정보</p> <table border="1" data-bbox="901 1176 1412 1422"> <tr><td>차대번호</td><td>KPACA4AB1BP000000</td></tr> <tr><td>차명</td><td>엑티언스포츠</td></tr> <tr><td>차량 번호</td><td>AA가1234</td></tr> </table>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엑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엑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p>4 단계 (차주)</p> <p>동영상 업로드</p>	 <p>◎ 차량 동영상</p> <p>파일을 선택해주세요.</p> <p>업로드</p> <p>가능한 확장자명 : mp4, mkv, avi, mov, flv</p> <p>최종 제출</p> <p>임시 저장</p>	<p>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p> <p>※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p> <div data-bbox="885 1601 1436 1892"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www.escar.or.kr 내용:</p> <p>AA가1234차량 동영상에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관리자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p> <p>▶결과는 수수료 납부완료 차량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p> <p>▶수수료 납부는 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확인</b></p> </div> <p>※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p> <p>※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p>						
<p>5</p>	<p>&lt;검사 합격 시&gt; 결제 문자 발송(1661-0808)</p>	<p>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단계 (협회)</p> <p>합격 여부 판정</p>	<p>[Web발신] AA가1234 고객님의, 안녕하십니까?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관자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p> <p>*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p> <p><a href="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bX2412197149">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bX2412197149</a></p> <p>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4,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p> <p>** 상기 메시지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요청에 따라 나이스페이먼트(주)에서 대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수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신 경우 삭제 부탁 드리며, 오발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p>	<p>② 합격 여부 안내</p> <p>※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p> <p>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p> <p>-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p> <p>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p> <p>-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p> <p><b>&lt;검사 불합격 시&gt;</b></p> 
<p>6 단계 (차주)</p> <p>수수료 결제</p>		<p>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p> <p>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p> <p>※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p> 



### 참고 3

## 조기폐차 주요 문의사항

####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 필요 시 공주시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b>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b>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b>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b>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별지 제 1호]

<b>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b>				처리기간 10일
<b>소유자</b>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여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여자는 명여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input type="checkbox"/> 성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 _____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 _____ - _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b>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b>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b>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b>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b>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b>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여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여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b>공주시장 귀하</b>				
<b>구비서류</b>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여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여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여자만 해당)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번호	<b>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b>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 )
				규격(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부착가능 <input type="checkbox"/>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input type="checkbox"/>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b>공주시장 (인)</b>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포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a href="http://www.escar.or.kr">www.escar.or.kr</a> )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같음